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사적분과 소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1. 22. (수요일), 14:00 ~ 16:3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3호
- ▣ 출석위원 : 이재운, 김건수, 유재춘, 이승용, 이영식,
진상철(이상 6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해변 재해위험지역 정비	(공 개)
2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 주상복합 신축	(공 개)
3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공원 조성	(공 개)
4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축사 양성화	(공 개)
5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 수목장림 조성	(공 개)
6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	(공 개)
7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주변 제2 동공원 조성	(공 개)
8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9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0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주변 노유자 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1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	(공 개)
1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3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	(공 개)
14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15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동·식물관련 시설 (축사/퇴비사) 신축	(공 개)
16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공 개)
17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공 개)
18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20-01-001

1.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해변 재해위험지역 정비

가. 제안사항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해변 재해 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해변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10차 소위원회('19.11.27) 보류 : 석축 공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후 높이 저감 및 친환경 공법에 대한 설계 보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양 낙산사 일원(사적 제495호 / 2008.12.18. 지정)
 - 소재지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일원 (전진리)
- (3) 신청내용<해변 위험지역 정비>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8-2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 사업내용

보완 전	보완 후
- 거친돌 석축 설치 · 1단 석축 → A=92㎡, H=2.4m, L=38.8m · 2단 석축 → A=93㎡, H=1.9m, L=49.4m · 3단 석축 → A=94㎡, H=1.8m, L=52.9m · 4단 석축 → A=87㎡, H=1.7m, L=52.9m	- 거친돌 석축 설치 · 1단 거친돌 석축 → H=2.0m, L=87.9m · 2단 거친돌 석축 → H=1.6m, L=14.5m · 3단 거친돌 석축 → H=2.1m, L=46.1m · 거친돌 배수로 → B=0.3×H=0.3m, L=81.0m
- 조경식재 · 잔디식재 → 평떼, A=530㎡ · 관목류 식재 → A=190㎡ · 수목제거 → 소나무 2주, 활엽수 2주	- 조경식재 · 개나리 식재 H=1.0×7가지, 198주 · 산철쭉 식재 H=1.2×W1.2, 304주 · 잔디식재 0.18×0.18, 1,370㎡

라. 참고사항

(1) 양양군 자문의견('19.10.3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과도한 시공을 지양하는 방향에서 설계하되 석축의 안전각도, 지형 변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제시한 안(案) 가운데 제2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일률적인 석축은 지양하고 자연스러움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석축 사이에는 관목, 넝쿨식물 등을 식재하여 석축부가 최대한 차폐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시공부 안전에 지장 없는 소나무는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

(2) 양양군 자문의견('19.12.27./문화재위원 ○○○)

- 낙산사 해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자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당초 제시된 설계안은 석축을 여러 단으로 조성하여 경사가 급하고 사면의 높이가 높아 위압감을 주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금번 수정 제시된 안은 석축을 3단으로 조성하고 지면 상의 높이를 2.0m 이하로 조정한 후 사면의 면을 확장하여 안정된 느낌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므로 낙산사 해변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제시된 설계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함
 - 사면에는 산철쭉을 심고 축대 위 부분은 현수형(개나리 등) 수목을 식재하고 사면 부분은 잔디 식재로 처리 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2.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 주상복합 신축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에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10차 소위원회('19.11.27.)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11차 소위원회('19.12.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경상감영지(사적 제538호 / 2017.04.26. 지정)
 - 소재지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 (3) 신청내용<주상복합 개발사업>
 - 위치 : 대구시 중구 사일동 15-1 외 2필지(매장문화재 유존지역){문화재구역 으로부터 120m 이격/3구역(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물 높이 32m 이상 개별심의)}
 - 시설물 설치 현황 :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지하 7층, 지상 51층
 - 연면적/세대수 : 82,163.87㎡ / 아파트 298세대, 오피스텔 60실, 판매시설
 - 건폐율/용적률 : 74.30% / 901.16%

구분	1차('19.11.)	2차('19.12.)	금회('20.1.)
연면적	83,840.32㎡	82,454.34㎡	82,163.87㎡
세대수	아파트 308세대, 오피스텔 64실	아파트 294세대, 오피스텔 64실	아파트 298세대, 오피스텔 60실
건폐율/용적률	74.30% / 930.47%	74.30% / 906.24%	74.30% / 901.16%
층수	지상 53층, 지하 7층 /187.4m (옥상 시설물 포함 197.4m)	지상 51층, 지하 7층 /181.5m (옥상 시설물 포함 191.5m)	지상 51층+49층, 지하 7층 /181.5m (옥상 시설물 포함 191.5m)

(4) 신청인 의견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상복합 개발사업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11.2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대구 경상감영지 좌측으로 119.8m 이격된 3구역(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구역)에 건축면적 4,250㎡, 연면적 83,840.32㎡, 높이 197.4m, 지상 5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정면의 중심 조망에서 벗어나 있으나 주변의 개발 정도에 비해 그 높이가 높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부결 1명, 보류 5명

3.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공원 조성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공원 조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제375호 / 1992.09.09. 지정)
 - 소재지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12-1 외
- (3) 신청내용<공원 조성>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산22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휴게쉼터, 전망대, 생태학습장, 놀이터, 초화원, 야외무대, 운동공간, 탐방로 등 조성

라.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보류 6명

4.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도 8차 소위원회('19.08.2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 반남 고분군(사적 제513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외
- (3) 신청내용<축사 양성화>
 - 위치 :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739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m 이격 /3구역(경사지붕 7m)}
 - 사업내용
 - 1동(지상1층), 건축면적 및 연면적 426.7㎡, 최고높이 5.7m, 축사 및 창고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5. 진도 용장성 주변 수목장림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주변에 수목장림 조성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도 용장성 주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진도 용장성(사적 제126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 외
- (3) 신청내용<수목장림 조성>
 - 위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산160{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0m 이격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부지 면적 : 2,000m²
 - ※ 골분함 안치용 구덩이 폭 50cm, 깊이 60cm 이내
 - 추모목 식재 : 배롱나무(25주), 황칠나무(20주), 동백나무(30주)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9.12.10./문화재위원 ○○○)
 - 본 신청건은 진도 용장성 주변 수목장림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추모목 식재 계획 등 세부내용 보완이 우선 필요함. 주변 다수 분포되어 있는 기존 봉분 형태의 묘지보다는 경관 저해 등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6. 강화산성 주변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에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공사>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1057-1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0m 이격/5구역(경사지붕18m이하/평지붕14m이하)}
 - 사업내용

구분	신청안	비고
건축부지	1,459㎡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건축면적	596㎡	
연면적	2,237.444㎡	
규모	지상5층	1개동
세대수	24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	필로티구조
최고높이	16.3m	평지붕, 5구역 14m 이하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7. 경주 명활성 주변 제2 동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주변 제2 동공원 조성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명활성 주변 제2 동공원 조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명활성(사적 제47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보문동 일원

(3) 신청내용<제2 동공원 조성사업>

- 위치 : 경북 경주시 보문동 3-3(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 공통사항)

* 공통사항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사업내용(신라전통 정원 등)

- 건축규모 : (주건축물) 4,091.8㎡, (부속시설) 2,885.5㎡

주건축물		부건축물	
면적	최고높이	면적	최고높이
(지하 1층)전기, 기계실 180㎡ (지상 1층)제1 체험관 1,270㎡ 회의실 258.2㎡ 로비/기타 1,300㎡ 제2 체험관 563㎡ 로비/기타 520.6㎡	7.45m	회랑 437.5㎡ 묘포장은온실 12㎡ 창고 290㎡ 중앙매표소 86㎡ 후문매표소 20㎡ 태양광시스템 1,440㎡	4.8m 5.0m 5.0m 4.0m 3.0m 4.0m

- 주차장 : 8,837㎡

(4) 신청인 의견

- 경주 동궁원과 보문관광단지 연계개발을 통한 수익성 및 관광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설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 신라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신라정원 조성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1.17./문화재위원 ○○○)

- 제시된 계획안은 명확성에 보이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와 관련 내용을 도면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사업명칭 재검토
 - 기존 '동궁원' 명칭 변경 권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보류 6명

8.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 1970.05.2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22-11번지 외 5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15m 이격/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924㎡
 - 건축면적(연면적) : 308.39㎡(411.43㎡)
 - 건물 높이 : 7.5m
 - 건축 규모 : 지상2층·지하1층,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타 : L형 옹벽(높이0.5~4m×37m), 자연석쌓기(높이0.5~4m×105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0.01.10./문화재전문위원 ○○○)
 - 여주 영릉과 영릉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115m 이격된 2구역(경사지붕 7.5m, 평지붕5m) 필지에 경사지붕 7.5m 형태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문화재 구역과의 사이에 333번 도로와 양궁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직접 조망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가결 5명

9. 파주 삼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삼릉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152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782㎡
- 건축면적(연면적) : 204.8㎡(204.8㎡)
- 건물높이 : 5.5m(경사지붕)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철골구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1.16./문화재전문위원 ○○○)

- 파주 삼릉 내 남서측 영릉, 북서측 순릉, 북측 능선 너머에는 공릉이 조성되어 있으며, 순·영릉 능침의 뒷산(해발100m)너머 골짜기를 능안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음
- 문화재구역을 중심으로 4방향의 산림지역과 골짜기는 1구역, 중심권역의 남측평지 일부는 2구역, 1·2구역을 벗어난 대부분은 3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신청대상지는 문화재구역과 연접된 1구역(개별심의)에 단독주택 신축(건축 면적 204.8㎡, 건물높이 5.5m, 경사지붕)을 계획하고 있음
- 대상지는 능안골로 불리는 곳으로, 이곳에 건물신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완충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부결 5명

10. 남양주 순강원 주변 노유자 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주변 노유자 시설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순강원 주변에 노유자 시설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기 허가 받은 부지('19.08.09./단독주택 신축) 내 신청인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건축면적 및 건물 높이 규모가 변경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순강원(사적 제356호 / 1991.10.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 (3) 신청내용<노유자 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36-1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29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 분	기허가내용	변경허가 신청	비 고
대지면적	667.00㎡	3740.00㎡	
건축면적(연면적)	125.28㎡(125.28㎡)	735.19㎡(1,429.82㎡)	
건물높이	5.7m(경사지붕)	6.5m(경사지붕)	
건축규모	지상1층, 1동,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지하1층, 1동, 철근콘크리트조	
용 벽	-	L형(높이0.0~2.2m×82.4m), 석축쌓기(높이0.0~3.0m×223.7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1.09./문화재전문위원 ○○○)

- 천검산(해발 391m)에서 흘러내린 능선 자락에 순강원(의창대군묘 포함)이 조성되어 있으며, 중심권역의 남측과 남동측 골짜기와 일부 산 끝자락 구릉지는 1구역으로 그 외는 2·3·4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문화재지정구역과 연결한 동측 골짜기에는 순강원 원찰인 봉영사 위치)
- 신청지는 순강원 남동측 문화재경계에서 약 29m 떨어진 1구역(개별심의) 내, 기존 무허가 건물(164.37㎡)을 철거하고, 단독주택 신축(건축면적 : 125.28㎡/지상1층/건물 높이 5.7m)을 허가 받았으나, 금회 노유자 시설 신축(건축면적 : 1,429.82㎡/지하1층, 지상1층/건물 높이 6.5m)으로 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하였음
- 신청 대상지는 순강원에서 조망되지는 않으나, 지정 구역과 가까운 구릉지 위에(봉영사가 내려다보이는 곳) 단독주택보다 큰 규모(약 11배)의 건물 신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자원적 특성 유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부결 5명

11.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10차 소위원회('19.11.27.)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86(문화재구역으로부터 67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내용
'19년 10차 소위원회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골기와▫ 최고높이/연면적 : 6.94m/97.5m²▫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구조 : 일반목구조, 한식골기와▫ 최고높이/연면적 : 6.57m/97.5m²▫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4) 신청인 의견

- 경주의 유구한 문화유산이 산재한 남산자락에 자연과 문화재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전통한옥(목조) 주택을 신축하여 주변 경관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남산 주변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조경식재 계획으로 보다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원안가결 5명

12.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759, 758-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7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목조, 한식골기와
 - 최고높이/연면적 : 5.87m/92.99m²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4) 신청인 의견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 신축사업
 - 남산일원의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고려한 전통 한옥으로 계획
 - 건축법,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규 기준에 부합
 - 조망성, 해발고도, 지형 및 주변 양지마을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
 - 신청인은 현재 노후된 빌라에 거주 중으로 경주에 발생한 지진이후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본 주택의 신축을 신청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1.17./문화재위원 ○○○)

- 도로에서 이격되어 있는 사면에 1층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에 어느 정도의 대지레벨에서 계획하는 것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지레벨과 배면 및 전면도로와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조건부가결 5명

13. 경주 남산 일원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10차 소위원회('19.11.27.)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높이를 주변 건물보다 낮게 할 것)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 일원
- (3) 신청내용<휴게음식점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003-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내용
'19년 10차 소위원회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구조 : 목조, 한식골기와▫ 최고높이/연면적 : 7.532m/합계 198㎡ [(가동) 99㎡, (나동) 99㎡]▫ 건축규모 : 지상 1층, 2동▫ 건축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구조 : 목조, 한식골기와▫ 최고높이/연면적 : 6.62m/합계 198㎡ [(가동) 99㎡, (나동) 99㎡]▫ 건축규모 : 지상 1층, 2동▫ 건축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4) 신청인 의견

- 사업대상지는 남산 일원 주변 동편에 위치한 농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립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11.19./문화재위원 ○○○)

- 휴게음식점 신축 건으로 현지에서 보았을 때 수목원과 접한 도로 측에서 정면이 계획되고 이와 관련 추후 유사한 건축물이 이 도로에 면해 신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인접해서 건물이 있고 인접된 도로 선형으로 보았을 때 남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건물 높이가 인접 건물과 비교하여 높아 낮출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물 산포지역으로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건축높이를 낮게 조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조건부가결 5명

14. 경주 남산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 일원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333, 1008-508{문화재구역으로부터 61m 이격/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9.1m
- 건축면적/연면적 : 106.2㎡/177.3㎡
- 건축규모 : 지상 2층, 1동
- 건축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 신청인 의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부결 5명

15.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동·식물관련시설 (축사/퇴비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10차 소위원회('19.11.27.)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사적 제241호 / 1974.12.14.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 (3) 신청내용<동·식물 관련시설(축사/퇴비사)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64-2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2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구분	내 용
'19년 10차 소위원회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 최고높이 : 7.4m ▫ 연면적 : 3,550㎡[(가동 : 축사, 창고) 2,875㎡, (나동 : 육성우사) 375㎡, (다동 : 퇴비사) 300㎡] ▫ 건축규모 : 지상 1층, 3동 ▫ 건물용도 :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
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 최고높이 : <u>6.9m</u> ▫ 연면적 : 3,550㎡[(가동 : 축사, 창고) 2,875㎡, (나동 : 육성우사) 375㎡, (다동 : 퇴비사) 300㎡]

구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규모 : 지상 1층, 3동 ▫ 건물용도 :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 ▫ 토공 : (흙깎기) 40,089m³, (흙쌓기) 23,917m³ ▫ 구조물공 : (자연석쌓기) H3m, L216m, (보강토옹벽) H1~9.45m, L213m

(4) 신청인 의견

- 신청지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을 신축하여 환경개선과 농가의 소득 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부결 5명

16. 익산 토성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92호 「익산 토성」 주변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토성 주변에 기존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9년 6차 소위원회('19.06.26.)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9년 7차 소위원회('19.07.24.)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11차 소위원회('19.12.26.) 보류 : 토성 주변 축사현황 종합적 파악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토성(사적 92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일원
- (3) 신청내용<무허가 축사 양성화>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445-2, 산53-14

	이격거리	허용기준	지목	매장문화재 현황
내용	167m 이격	1,2구역 ※ 공통사항 : 개별심의	전, 임야	유존지역 아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280㎡ / 연면적 2,349.20㎡
 - 건축규모 및 재질 : 총 5동(계사) / 철 쇠파이프 구조 / 최고높이 4.5m

1동	2동	3동	4동	5동	총 면적
594㎡	648㎡	560㎡	541.20㎡	6㎡	2,349.20㎡
계사	계사	계사	계사	약품창고	

(4) 보완사항

- (악취저감) 양성화를 신청한 축사 4동 사이에 느티나무(동간 사이에 10식, 동 길이 66m) 식재하고, 철거되는 축사 등 건물자리에 소나무 식재
- (외관개선) 기존 8개 축사 중 4개 동과 자재보관창고 등을 철거하고, 양성화를 신청한 축사 4동의 지붕 물매(3/10이상)를 맞추기 위해서 강판을 접어 올리고 칼라강판의 색상 등을 변경하여 경관저해를 최소화 시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부지	9,280m ²	9,280m ²	-
연면적	2,349.20m ²	2,349.20m ²	-
규모	5동	5동	· 신청된 5개 동(축사 4동, 창고 1동) 이외에 사용빈도가 적은 축사(4동)와 창고 등을 철거하고 철거자리에 소나무 식재 · 양성화 축사 사이에 느티나무 식재
최고높이	4.5m	4.5m	-
지붕색상	적색	다크 그레이	변경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1.14./문화재위원 김건수)

- 축사 4동과 관리사 1동을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
- 축사 4동 사이에는 차폐시설(느티나무)을 식재하고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면 익산토성의 경관 및 악취저감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축사는 설계안과 동일하게 건축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어도 될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9.07.19./문화재위원 이재운, 이승용, 김건수, 전문위원 김철주)

- 공통사항
 - 본 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여건 및 생계수단으로서의 여건 등에 대한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고려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특성, 종류, 가치, 검토지표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해당 신청 건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검토는 유사행위에 대한 타지역(부여 등)에서 적용된 기준을 동일하여 적용하여 행정적 판단에 대한 일관성을 기할 필요 있음

- 본 신청 건에 대한 영향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익산 토성과의 이격거리가 가깝고, 신청필지와 연결한 필지에 무허가축사 다수가 설치되어 무허가축사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악취 등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 익산 토성에서 직접적으로 조망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내·외부 조망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3) 사전검토 현지조사의견('19.03.19./문화재위원 이승용, 전문위원 조홍석, 김철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공부주)

- 문화재 가치 및 현황
 - 해당 문화재는 면단위 독립형 문화재의 특성을 지닌 토성으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입지는 동서측 반경 200미터까지 구릉형 산림 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외곽으로 경작지 및 촌락, 창고 등이 형성되어 있음
- 사전검토 신청 건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 본 건은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서측으로 194미터 이격하여 기 위치한 축사의 양성화(적법화)를 위한 허가신청 건임
 - 위치 상 문화재로부터의 이격거리가 가깝고 북서풍의 영향으로 토성방향으로 악취가 영향을 미치며, 토성에서 직접 조망이 이루어지고 있어, 악취로 인한 문화재 주변 관람환경의 저해, 익산토성의 내외부 조망성 저해 등 역사문화환경의 일체적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유사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 주변의 난개발로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향후 허가신청 시 보완내용
 - 현상변경 신청 시 시설의 현대화 방안, 외관개선방안,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계획 등 다음사항을 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
 - 세부적인 규모에 대한 현황자료(계사면적, 사육두수 등)
 - 시설현대화 방안
 - 환경개선 방안(악취저감대책, 두수제한, 밀폐방안, 환기굴뚝높이조정 등)
 - 외관 정비계획(문화재와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 저채도 색상의 시설물 외관개선, 간결한 시설물 형태, 밀폐형 구조 등)
 -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 악취배출허용기준에 충족되는 수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

(4) 관리단체의견서('19.12.10./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본 사업은 익산토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 2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무허가 축사(2008년도 이전축조)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허용기준 상 공통사항으로 동물 관련 시설은 개별심의(2018.10.19. 반영)로서, 그 이전에는 축사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었음
- * 신청인의 축사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축사로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대상(2020년 6월 한)으로서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이 취해짐
- 해당위치는 익산 토성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67여 미터 이격되어 있는 지역이나 축사 주변을 식재를 조성하고 외관 및 색상을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과 축사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 함께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가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현황 및 영향검토 기준(안) >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간 신청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신청건수	-	1	1	1	34	37

○ (처리결과) 총 37건 중 가결(허가) 12건, 부결 16건, 조건부 8건, 보류 1건

(단위: 건)

지역	신청	문화재위원회				자체처리		비고
		가결	부결	조건부	보류	허가	조건부	
경주	5	2	1	1	-	-	1	
부여	18	-	10	3	-	4	1	
공주	3	-	-	-	-	3	-	
익산	11	2	5	1	1	1	1	
계	37	4	16	5	1	8	3	

○ (허가(가결) 현황) 허가된 12건의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아니고 문화재로부터 조망되지 않으며 악취가 적음(평균 이격거리 331m)

(단위: 건, m)

허용기준	허가건수	평균 이격거리	건축유형	매장유종	조망	악취	비고
1구역	3	271	우사(증축) 3	-	-	-	위원회(2) 자체(1)
2구역	1	310	우사(증축) 1	-	-	-	자체(1)
3구역	1	439	우사(증축) 1	-	-	-	위원회(1)
4구역	7	305	돈사(증축) 2 우사(증축) 5	-	-	-	위원회(1) 자체(6)
계	12	331	돈사(증축) 2 우사(증축) 10	-	-	-	위원회(4) 자체(8)

- (불허 현황) 불허된 16건의 경우,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가깝고 문화재로부터 조망되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악취 존재(평균 이격거리 231m)
(단위: 건, m)

허용기준	불허건수	평균 이격거리	건축유형	매장유종	조망	악취	비고
1구역	5	124	계사(신축) 2 계사(증축) 2 우사(증축) 1	2	5	4	위원회
2구역	6	191	돈사(증축) 1 우사(신축) 2 우사(증축) 3	-	5	1	위원회
3구역	3	301	우사(신축) 1 우사(증축) 2	1	3	-	위원회
6구역	2	306	우사(증축) 2	-	2	-	위원회
계	16	231	계사(신증축) 4 돈사(증축) 1 우사(증축) 11	3	15	5	위원회

□ 문화재 영향검토

- (영향검토)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영향검토
 - (경관지표)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문화재종류별 선별적용)
 - (환경지표) 소음, 진동, 대기오염, 수질어염, 토양오염, 화학물질, 빛공해, 형질변경
 - (허가기준(안)) 유사시설이 기허가된 상황 및 축사 양성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는 허가여부를 위한 검토사항으로 고려
 - ① 문화재로부터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고 단순 조망되는 농가의 경우 수목 식재를 통해 차폐
 - ② 축사구조는 철근 또는 철파이프 구조로 건립하고 지붕과 벽체는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구조물로 구축
 - ③ 오·폐수 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악취에 취약한 돈사와 계사의 경우, 환경부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

■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 비고 2. 복합악취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제외하고 신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가

□ 파급효과

- 불허 처리된 11건(중복 5건 제외)의 농가가 허가기준(안)을 충족할 경우 7건이 추가로 허가될 것으로 추정됨('19.12월 기준)

지역	불허 건수	허용기준	평균 이격거리	건축유형	매장 유존	조광	악취	조건 충족시
익산 토성	4	1~2	233	계사(2), 돈사(1), 우사(1)	-	4	계사(2)	허가(4)
익산 쌍릉	1	1	150	우사	-	1	-	'허가(1) (17년 신청건)
부여 나성	3	1,3,6	228	계사(1), 우사(2)	1	3	계사(1)	허가(2) 불허(1) (연접매장유존)
부여 능산리	1	1	1	계사	1	1	계사(1)	불허 (연접매장유존)
부여 능안골	1	3	484	우사	1	1	-	불허 (매장유존)
경주 회유토기	1	2	72	우사	-	-	-	불허 (인근, 신축)
계	11				3	10		허가(7) 불허(4)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식재 계획 등은 문화재청 검토를 받을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조건부가결 5명

17.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7년 12차 위원회('17.11.2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용담동 유적(사적 제522호 / 2012.05.17. 지정)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서천길 8-0(용담이동 2623-1)
- (3) 신청내용<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이동 2704-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이격/ 허용기준 미수립)
 - 사업내용

구분	1차('17.11.22) / 부결	2차('20.01.22) / 금번 심의
대지면적	314.00㎡	314.00㎡
건축면적	186.38㎡	134.99㎡
연면적	344.27㎡	169.01㎡
규모	지상 3층(최고높이 11.24m)	지상 2층(최고높이 7.3m)
용도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0.01.2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지적묘와 면한 부분은 대략 인근 건물의 건축선과 수목 등을 참고하여

일정거리의 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건물 높이는 지석묘와의 거리와 인근 건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높이는 높은 편으로 조정이 필요함. 또한 지붕 형태의 경사면도 3/10이상 확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1차 신청시 현지조사의견('17.10.18./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제주 용담동 유적이 인접되어 있고 지석묘와의 거리 약 4.8m 떨어져 있는 위치에 3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청지 주변은 1~2층 가옥이 분포하고 있음
- 신청주택은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신청 가옥의 3층 신축시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부결 5명

18.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11차 소위원회('19.12.26.) 보류 : 설계 수정 후 재검토(높이, 경사지붕 등)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등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65-57번지 외 1필지{매장문화재 분포지역(지표/발굴조사구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m 이격)
 - 사업내용

구분	'19년 11차 소위원회-보류	금회 신청안
신청내용	- 대지면적 309.0㎡, 건축면적 158.1㎡, 연면적 304.23㎡ - 건축규모: 지상2층(휴게음식점) - 구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8.3m(평지붕)	(좌 동) (좌 동) - 구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7.6m(경사지붕)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9.12.19./문화재위원 ○○○)
 - 기존 건물 규모에서 건축면적 및 형상에서 신축의 경우임. 신청된 안은 기존과 제시안과의 비교 검토된 내용과 주변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기에 자료가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함.

다만, 신축되는 계획안은 규모와 높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성벽관계를 고려하여 경사지붕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5명 / 조건부가결 5명